|  |  |  |
| --- | --- | --- |
|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  국무원령제644호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챵  2013년 12월 11일  국무원은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2)항을 “(2) 구정, 3일 휴무(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초사흘).  이 결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은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정하여 다시 공포한다.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  (1994년 12월 23일 국무원 반포, 1999년 9월 18일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7년 12월 14일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3년 12월 11일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제1조** 전국의 명절과 기념일의 휴무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전체 공민의 휴무 명절은 아래와 같다.    (1) 신정은 1일 휴무(1월 1일)    (2) 구정은 3일 휴무(음력 정월초하루 초사흘)    (3) 청명절은 1일 휴무(음력 청명 당일)    (4) 노동절은 1일 휴무(5월 1일)    (5) 단오절은 1일 휴무(음력 단오 당일)    (6) 중추절은 1일 휴무(음력 추석 당일)    (7) 국경절은 3일 휴무(10월 1일～3일)  **제3조** 일부 공민의 휴무 명절과 기념일은 아래와 같다.    (1) 부녀절(3월 8일)은 부녀들만 반나절 휴무    (2) 청년절(5월 4일)은 만 14세 이상의 청년들만 반나절 휴무    (3) 아동절(6월 1일)은 14주세 미만의 소년아동들만 1일 휴무    (4) 중국인민해방군 건군기념일(8월 1일)은 현역 군인들만 반나절 휴무.  **제4조** 소수민족의 관습상 명절은 각 소수민족 집거구역의 지방인민정부에서 각 민족의 습관에 따라 휴무일을 규정한다.  **제5조** “2.7” 기념일, “5.30” 기념일, “7.7”항일전쟁기념일, “9.3”항일전쟁승리기념일, “9.18”기념일, 스승의 날, 간호사의 날, 기자의 날, 식목일 등 기타 명절, 기념일은 휴무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전체 공민의 휴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친 경우에는 근무일로 휴무일을 대체한다. 일부 공민의 휴무일은 토요일, 일요일과 겹쳤더라도 휴무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 **国务院关于修改**  **《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  **的决定**  国务院令第644号  现公布《国务院关于修改〈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的决定》，自2014年1月1日起施行。  　　　　　　　　　　　　　　　　　 总理 　李克强 　　　　　　　　　　2013年12月11日  国务院决定对《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作如下修改：  将第二条第二项修改为：“（二）春节，放假3天（农历正月初一、初二、初三）”。  本决定自2014年1月1日起施行。  《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根据本决定作相应修改，重新公布。  **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  (1949年12月23日政务院发布；根据1999年9月18日《国务院关于修改〈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的决定》第一次修订；根据2007年12月14日《国务院关于修改〈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的决定》第二次修订；根据2013年12月11日《国务院关于修改〈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的决定》第三次修订)  第一条　为统一全国年节及纪念日的假期，制定本办法。  第二条　全体公民放假的节日：  （一）新年，放假1天(1月1日)；  （二）春节，放假3天(农历正月初一、初二、初三)；  （三）清明节，放假1天(农历清明当日)；  （四）劳动节，放假1天(5月1日)；  （五）端午节，放假1天(农历端午当日)；  （六）中秋节，放假1天(农历中秋当日)；  （七）国庆节，放假3天(10月1日、2日、3日)。  第三条　部分公民放假的节日及纪念日：  （一）妇女节(3月8日)，妇女放假半天；  （二）青年节(5月4日)，14周岁以上的青年放假半天；  （三）儿童节(6月1日)，不满14周岁的少年儿童放假1天；  （四）中国人民解放军建军纪念日(8月1日)，现役军人放假半天。  第四条　少数民族习惯的节日，由各少数民族聚居地区的地方人民政府，按照各该民族习惯，规定放假日期。  第五条　二七纪念日、五卅纪念日、七七抗战纪念日、九三抗战胜利纪念日、九一八纪念日、教师节、护士节、记者节、植树节等其他节日、纪念日，均不放假。  第六条　全体公民放假的假日，如果适逢星期六、星期日，应当在工作日补假。部分公民放假的假日，如果适逢星期六、星期日，则不补假。  第七条　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 |